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8일, 김희정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6. 4. 21.)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희정의원)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종수)

1. 정기점검의 실시 등(안 제50조의3 등)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u>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u>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보수-----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50조의6(정보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도로법」 제50조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¹⁾ 제5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노면
2. 교량
3. 터널
4. 지하차도
5. 횡단보도 및 육교
6. 암거 및 배수관
7. 측구 및 배수로
8. 도로표지등 안전시설
9.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체적으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81호)에 따르면,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의 노면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되, 교량과 터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관리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²⁾

한편, 「시설물관리법」³⁾에서는 교량 및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성능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함)⁴⁾ 및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4호)⁵⁾에서는 도로시설⁶⁾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2)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시설물의 점검)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과 터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연장이 100미터 미만인 교량은 같은 법 제2조의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이외에도 도로의 옹벽, 절토사면도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에 해당됨(「시설물관리법」시행령제15조제5호)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12. 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5)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14호)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와 같이 여러 법률에서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를 「도로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먼저, 개정안은 도로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관리대책의 수립,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도로시설의 안전 및 기능 보전, 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점검·조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5조(점검진단등의 구분) 제4조제1항제1호의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진단등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구분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일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제6호와 같이 일상점검으로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도로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3. 긴급안전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정밀안전진단: 중점관리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성능평가: 중점관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6. 일상점검: 도로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외관상태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 안전점검의 대상시설 및 주기 등은 <참고자료 1> 참조

- 6) 해당 규정에서는 「시설물관리법」상의 시설물(제1종, 제2종, 제3종) 외의 도로시설(일상관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2020. 1. 1. 시행)하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로 개별 법률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점검체계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개정안과 현행 「기반시설관리법」 체계 비교 >

구분	개정안	현행 「기반시설관리법」
정기점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실시	1년에 2회 또는 3회
긴급점검	긴박한 위험 발생시 긴급점검, 정기점검 부실 수행시 긴급점검	중점관리 시설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안전조치	필요시 안전조치	점검진단등 결과 목표등급 미달시 성능개선 수행여부 검토, 중대결함 통보 받은 경우 보수·보강 조치
정보시스템 구축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도로시설 등 교통시설, 방재시설 등

다음으로, 개정안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시설에는 노면을 포함하여 교량, 터널, 옹벽 등 구조와 특성이 다양한 시설물이 모두 포함되고, 각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방법, 기준 등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물의 특성

과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 기준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현행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교량 및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⁷⁾

나. 국토교통부 의견

시설물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성능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로시설물 등이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로 개별 법률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점검체계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안전점검)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복기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의3제3항 중 “긴급점검”을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절차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안 제50조의4제5항 중 “긴급점검의 기준”을 “긴급점검의 대상·기준”으로 한다.

안 제50조의5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안 제50조의6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수행한 것으로 평</u> <u>가한 경우에는 국</u> <u>토교통부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해</u> <u>당 도로에 대하여</u> <u>긴급점검을 실시할</u> <u>수 있다.</u>	----- ----- ----- ----- -----제5 0조의4제2항에 따 른 긴급점검----- -----.
	④ <u>제1항에 따른</u> <u>정기점검의 실시시</u> <u>기 · 대상 · 방법 ·</u> <u>절차 등 필요한 사</u> <u>항은 국토교통부령</u> <u>으로 정한다.</u>	④ ----- ----- -----방법 및 절 차 등----- -----.
<u><신 설></u>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u>도로관리</u> <u>청은 도로의 파손</u> <u>이나 붕괴 등으로</u> <u>긴박한 위험이 발</u> <u>생할 우려가 있다</u> <u>고 판단하는 경우</u> <u>소관 도로에 대한</u> <u>긴급점검을 실시하</u> <u>여야 한다.</u> ② <u>국토교통부장관</u> <u>은 도로의 구조상</u>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 ④ (개 정안과 같음)

공중의 안전한 이
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해당 도로
에 대하여 긴급점
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구에 따
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
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경
우 그 결과보고서
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긴급점검
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⑤ -----
-----긴급 점검
-----의 대상 · 기준-----

<신 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

	인정되는 경우에는	-----
	지체 없이 해당 도	-----
	로의 보수·보강	-----필
	등 필요한 조치를	요한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
	② 도로관리청은	② (개정안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③ -----
	은 공중의 생명과	---제1항에-----
	안전을 확보하기	-----
	위하여 제1항에 따	-----
	른 안전조치에 소	-----
	요되는 비용의 일	-----.
	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신 설>	제50조의6(정보시스템	<삭 제>
	구축)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50조의	
	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	
	른 긴급점검의 효	

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를 “보수”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u>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u>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 ----- <u>보수</u> ----- -----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u> <u>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u>

<신 설>

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

<신 설>

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